

의안번호	2211798
의 퇴 인	이주영 의원
회 답 일	2025. 8. 21.
추 계 번호	25C3843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0조의2 (노쇠예방사업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※ (안 제1조의2제6호) “노쇠”란 정상적인 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,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, 생리,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질환, 낙상,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태를 말함 ※ 보건복지부장관은 본 조에 따른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30조의3 (노쇠극복연구사업)	보건복지부장관은 노쇠극복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비용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※ 보건복지부장관은 본 조에 따른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의2 (노쇠예방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3 (노쇠극복연구사업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 연구사업(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포함)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참고로, 국정기획위원회는 「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(안)」(2025.8.)을 통해 보건소 중심의 적극적 건강관리·노쇠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현재 보건복지부는 건강백세 운동교실, 노쇠예방관리서비스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
 - (건강백세 운동교실)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2025년 건강보험재정으로 149.5억원을 집행 예정이며, 2026년부터 노쇠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·복지관 등에 배포하고, 2027년부터 건강백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
 - (노쇠예방관리서비스) 2026년 하반기부터 보건소 기반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정례적 노쇠 평가를 실시하고, 이용자 생활 현황·요구도 파악 등을 통하여 대상 맞춤 노쇠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
 - 또한, 질병관리청은 노쇠 예방 사업기획, 모니터링 체계 마련, 연구 기반 활용 등을 추진 중
 - (노쇠 예방 사업기획) 2025년 노인 노쇠 예방 사업모델과 노쇠 단계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여 2026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
 - (모니터링 체계 마련) 지자체별 노쇠 현황 파악과 평가를 위한 건강 노화 모니터링 체계 마련
 - (연구 기반 활용) 국립보건연구원을 통한 연구 결과 지원, 노쇠 R&D 및 노쇠 예방 사업의 중재모형 개발 등 연구기획
 - (협력체계 마련) 노쇠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도입 자문 등 추진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확대하거나 신규로 추진할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 연구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안 제30조의2제2항은 노쇠예방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, 안 제30조의3제3항은 노쇠극복 연구사업 관련 업무수행 절차 등 제반 사항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